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앱마켓 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순위 표시시 최근 1주일
기준 순위 표시 의무화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06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앱마켓 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순위 표시시 최근 1주일 기준 순위 표시 의무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9.

다. 회부연월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 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앱마켓 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순위 표시시 최근 1주일 기준 순위 표시 의무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생 략) <u><신 설></u>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u>
<u>② (생 략)</u> <u><신 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④ 제2항에 따른 최근 1주일 간</u>

현행	개정안
	<u>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순위를 표시할 때 최근 1주일 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임.
- 앱 마켓 순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등의 지표들은 누적 지표에 해당하여 한번 그 순위가 정해지면 고착화되기 쉽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자의 앱마켓 시장 진입도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최근 정보를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주무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 마켓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

한 규제라는 의견과 구글 등 앱마켓사는 앱 개발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활성이용자 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주일 이용자 수 기준 순위’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표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개정 내용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으며, 특정한 기준의 순위표시 강제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개별 앱 실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정안이 개발사가 앱마켓사업자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할 협조의무까지 포함한다면 개발사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앱 개발사가 단기간의 이벤트, 매크로 등을 활용하여 순위를 왜곡,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 1주일간 이용자 수 기준 순위는 이미 일정 수준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대형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여 스타트업이 순위 경쟁에

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고, 이용자 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순위 표시 의무부과는 과도한 규제로 정보의 과잉 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여 오히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콘텐츠 제공자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5